
● 세계 각국의 도서관법

스위스의 도서관법

스위스의 도서관법 <1911. 9. 29>

스위스연방의회는 1910년 3월 18일의 연방집행원의 제안을 심의한 후 다음 법률을 의결한다.

제1조 ① 1894년 6월 28일의 연방의결에 의하여 창설된 스위스 국립도서관은 Helvetica, 그중에도 특히 새로운 연방(1848)의 결성 이후의 것을 수집, 보존 및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립도서관의 주소는 Bern에 둔다.

제2조 Helvetica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스위스 또는 스위스의 개개 부분에 관련되는 출판물과 문학적 창작물로서 스위스내부 또는 외국에서 발행된 것.

② 스위스의 작가가 저작한 작품.

③ 스위스내에서 발행된 인쇄물로서 스위스의 문화에 대하여 중요한 것.

제3조¹⁾

제4조²⁾

제5조 연방집행원은 도서관위원회(제9조)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도서관에 기타의 도서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① 국립도서관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연방의 예산에 의하여 정한다.

②³⁾

제7조⁴⁾

제8조 연방은 수집물을 일반의 사용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량의 Helvetica를 보유하고 이를 계속하여 수집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강력한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수집을 위하여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① 국립도서관은 연방내부에 소속된다.

② 연방집행원은 내무부의 제청에 의거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스위스 도서관

1), 2), 3), 4) 1937년 10월 28일의 Luzern국민도서관에 대한 연도별연방보조금의 폐지에 관한 연방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삭제됨.

위원회를 선임하며, 동 위원회는 스위스 국립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과 최고 관리권을 가진다. 동 위원회는 각 지역과 3개의 국어⁵⁾를 적절히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

제10조 연방집행원은 도서관위원회의 구속력 없는 제청에 의거하여 임기 3년⁶⁾으로 도서관장 1인(보수등급 1급) 7을 선임한다.

제11조 ①도서관장은 국립도서관에 대한 기술적·행정적·학문적 지도권을 가진다. 도서관장은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 ③⁸⁾

제12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방집행원령으로 정한다.

1. 국립도서관의 조직과 관리 및 도서관위원회와 도서관장의 권리와 의무.

2.⁹⁾

제13조 이 법에 의하여 1894년 6월 28일의 스위스 국립도서관설치에 관한 연방의결 및 1908년 12월 23일의 내무부의 조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제1항 국립도서관의 항을 삭제한다.

제14조 효력발생일 : 1912년 1월 1일

스위스국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명령 <1912년 9월 7일>

스위스연방집행원은 1911년 9월 29일의 스위스국립도서관법(이하 “연방법률”이라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내무부의 제안에 의거하여 아래 명령을 의결한다.

제1조 스위스국립도서관은 연방내무부에 소속된다.¹⁰⁾

제2조 내무부는 연방집행원에 그 의결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과 기타 위원의 선임, 도서관의 관장, 부관장 및 기타의 직원¹⁰⁾의 선임과 보수에 관한 제청, 도서관의 연도별 예산안, 연도별 업무보고서 및 연도별 결산안¹¹⁾을 제출한다.

제3조 내무부는 도서관령을 제정하여, 연방재무관세부와 협의하여 도서관의 회계출납제도¹²⁾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5) 현재는 공용어라고 함(연방현법 제116조 제2항)

6) 현재는 임기 4년(1958년 10월 3일에 개정된 1927년 6월 30일의 연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7) 현재는 상위등급(1972년 10월 18일의 직무분류령 제7조).

8) 삭제(1927년 6월 30일의 연방공무원법 제5조 제1항, 제6조 및 제80조 제2항 및 1929년 10월 5일 직무분류령 제2조 제2항 A호 V2C)

9) 1937년 10월 28일의 Luzern 국민도서관에 대한 연도별 연방보조금의 폐지에 관한 연방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삭제됨.

10) 현재는 1959년 11월 10일의 공무원령(1) 제4조 제1항, 제2항, 1927년 6월 30일의 연방공무원법 제36조 및 1959년 11월 10일의 고용원령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5조 참조.

11) 현재는 예산안과 국가회계는 총괄원칙과 단일원칙에 따라 연방재무행정관청이 작성한다 (1968년 12월 18일의 연방재무회계법 제3조 제2항 및 제16조 제3항 및 1968년 12월 18일에 개정된 1914년 3월 26일의 연방행정조직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3).

12) 현재는 회계출납제도에 관하여는 1945년 6월 29일의 연방행정부에 있어서의 회계출납 및 부기업무에 관한 명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내무부는 도서관위원회 또는 도서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국립 도서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행한다.

② 내무부는 도서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업무에 관하여 도서관장과 직접 의견교환 을 한다.

제5조 도서관위원회는 연방내무부에 소속되며, 국립도서관에 대한 감독권과 최고운영권 을 가진다.

제6조 ①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규칙을 제정하며, 그 업무를 감독 한다.

② 도서관위원회는 내무부에 연도별 업무보고를 행하며, 분기별 결산보고서와 연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며 매년 예산안을 작성한다.¹³⁾

③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목록작성원칙의 확정.

2) 승인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모든 저작물의 출간.

3) 새로운 수집분야의 추가.

4) 승인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2,000프랑을 초과하는 일시적 구입에 관한 결의.

④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의 감정기관 및 자문기관이 된다.

1) 도서관장 및 부관장의 선임

2) 상근직원의 보수

3) 각 금액이 500프랑을 초과하는 경우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4) 도서관규정 및 기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국립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도서업무(연방주율 제5조)의 배정

6) 도서관위원회의 사업신청이 제출된 경우에 국립도서관에 위임되지 아니한 새로운 도서해제 내지 도서관업무 또는 기타의 관계업무의 연방자금에 의한 실시 또는 지원

제7조 도서관위원회는 연방집행원이 결정임기로 선임한다. 도서관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도서관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선거하며, 사무국장으로서 도서관장을 지명하고 1인의 문서책임자를 지명한다.

제8조¹⁴⁾ 도서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6회의 통상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의 특별소집 또는 위원 3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의결에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의결은 단순다수결에 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급박한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을 행하는 권한을 가지며, 차기 회의에서 위원회

13) 현재는 예산안과 국가회계는 총괄원칙과 단일원칙에 따라 연방재무행정관청이 작성한다 (1968년 12월 18일의 연방재무회계법 제3조와 제16조 제3항 및 1914년 3월 26일의 연방행정조직법 제33조 제1항의 3).

14) 프랑스어판 법문에는 이 조는 2개항으로 되어 있다. 그 제1항은 독일어판 법문의 제1단에 해당한다.

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9조 ① 위원회의 위원은 협정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② 연방집행원은 위원회의 신청에 의거하여 업무의 범위에 따라 연도말에 독자적인 업적에 대하여 특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¹⁵⁾ 도서관장은 국립도서관의 기술적·행정적·과학적인 운영권을 가진다.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도서관장의 권한에 속한다.

- 1) 도서관업무의 조직 및 할당.
- 2) 예산에 따른 자금의 재정적 관리.
- 3) 분기별 결산서와 연도별 결산서의 작성 및 연도별 업무보고서의 작성.¹⁶⁾
- 4) 이 령 제6조 제3항 4)를 유보하며 연방법률 제2조의 기준에 따른 Helvetica의 구입.
- 5) 부장관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선임 및 재선임의 제청.
- 6) 500프랑 이내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관한 내무부에의 제청.
- 7) 다른 처리방안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도서관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관한 감정의견 및 신청의 제출.

제11조 도서관장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 외부에 대하여 국립도서관을 대표하며, 도서관 직원 전체의 장이다.

제12조 도서관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제13조 부관장은 도서관장이 지장이 있거나 부재중인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되며, 위원회로 부터 문서의 관리를 위임받을 수 있다.

제14조 연방내무부는 이 령을 시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효력발생일 : 1912년 9월 16일〉

스위스 국립도서관의 도서관기금설치에 관한 연방집행원결의 <1945년 10월 26일>

스위스연방집행원은 1911년 9월 29일의 스위스국립도서관법 제1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I. 도서관기금의 설치 및 증액

제1조 스위스 국립도서관은 이 연방집행원결의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도서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2조 기금의 창설 및 증액은 전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재원에 의한다.

① 연방이 도서관에 수집물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교부한 자금 중의 절감액 전액.

15) 프랑스어판 및 이태리어판 법문에는 이 조는 2개항으로 되어 있다. 각 단은 1개항을 이룬다.

16) 현재는 예산안과 국가회계는 총괄원칙과 단일원칙에 따라 연방재무행정관청이 작성한다 (1968. 12. 18의 연방재무회계법 제3조와 제16조 제3항 및 1914년 3월 26일의 연방행정조직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3).

- ② 도서관에 기금투자로서 교부되거나 현년도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도록 교부된 현금 증여, 유증 또는 기타의 증여 전액.
- ③ 전 ②호에 의한 증여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 ④ 복사본의 판매대금
- ⑤ 비정기적 이용수수료, 과태료, 독촉수수료 및 반환하지 아니한 담보물에서 발생한 수입.

제3조 수집물의 증가와 유지를 위한 추가자금의 절감액은 기금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연방국고에 귀속된다.

II. 기금의 사용

제4조 ① 기금은 국립도서관의 수집물의 증대를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목적물의 취득을 시간적으로 연기할 수 없고 즉시 구입하지 아니하면 도서관이 제공된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2조 ②호에 의한 재원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에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도서관업무의 재정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 할 수 없다.

III. 처분권

제5조¹⁷⁾ 국립도서관장의 기금청구액이 500프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스위스 도서관위원회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이 500프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연방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IV. 기금의 관리

제6조 연방재무해정관청은 1928년 6월 28일의 연방국고금과 특별기금의 투자에 관한 연방법률¹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한다.

V. 종결규정

제7조 이 연방집행원결의는 194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연방내무부와 연방재무·관세부는 이 결의의 집행권한을 가진다.

스위스연방회의중앙도서관규정(1969. 6. 23)

스위스연방집행원은 1968년 8월 28일의 스위스중앙도서관의 내무부로 부터의 연방내각사무처에의 잠정적 업무재분배에 관한 연방집행원결의 제3조를 시행하기 위하여 연방상원 문현정보위원회(Dokumentationskommission)의 동의를 얻어 아래 규정을 의결한다.

제1조(구성) 스위스연방의회중앙도서관(EPZB)은 서부연방청사(Bundeshaus-West)내의 본 도서관과 의회건물내의 연방하원참고도서관 장서로 구성한다.

제2조(소속) EPZB는 연방내각사무처에 소속된다.

17) 현재 이 규정은 이 연방집행원결의 제2조 ②호에 의한 재원에 의하여 성립되는 기금부분에만 전적으로 적용된다.

18) 현재는 1968년 12월 18일의 연방재무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서구입) ① EPZB의 도서구입은 의회와 연방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행한다. 참고도서관의 장서는 의회의 필요에 따라 문현정보국(Dokumentationsdienst)의 동의를 얻어 통합한다.

② EPZB의 문현정보위원회는 의회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문현정보위원회 또는 문현정보국은 특정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③ EPZB는 연방의 관공서출판물과 각주와 다국의 중요한 출판물을 수집한다.

④ EPZB는 국제연방발간물의 보관소로 한다. EPZB는 연방의 각종 행정도서관에 기타 국제기관의 간행물을 목적에 맞게 배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예산자금)EPZB의 예산자금(Budgetkredit)은 문현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의 협의를 얻어 연방내각사무처가 재무예산안제안서에 편입한다.

제5조(이용) ① 본도서관은 스위스연방의회의원, 의회공무원 및 기타의 연방관청과 연방행정부의 이용에 제공된다. 의회의원, 문현정보직원 및 기타의 의회공무원은 장서의 이용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② EPZB는 특별신청에 의거하여 학문적 업무를 위하여 외부인에게도 공개된다.

③ 참고도서관의 장서는 대출할 수 없다.

제6조(개관시간) ① 본도서관은 행정부의 근무시간동안 개관한다.

② 참고도서관은 스위스연방의회의 회기 동안은 다음 구분에 따라 개관한다.

—주중 최초개회일 : 회의개시 반시간 전부터 20시까지

—주중 최종개회일 : 8시부터 회의종료 반시간 전까지.

—기타의 개회일 : 모두 8시부터 20시까지.

③ 스위스연방회의 의원은 제2항에 게기된 개관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회기간중에도 참고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연방하원 사무총장은 세칙을 정한다.

제7조(연방하원의 문현정보국에 대한 관계)

① EPZB는 1967년 6월 27일의 연방하원 문현정보국에 관한 연방의결 제5조 제1항19)에 규정된 의회도서관으로 본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문현정보국에 대한 세부관계는 연방내각사무처의 시행규정으로 정하며, 이 시행규정은 문현정보위원회의 인가를 요한다.

제8조(행정관청내부의 조정업무) ① EPZB는 도서관과 연방행정부의 문현정보기관(Dokumentationsstelle)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다. 연방내각사무처는 중앙행정조직담당기관의 협의를 얻어 연방집행원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EPZB는 스위스연방인사관청의 협의를 얻고 스위스국립도서관과 협조하여 도서관직원과 문현정보직원의 교육과 보수교육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EPZB는 자동화(Automation)조정기관, 전자계산본부 및 기타의 연방행정부의 도서관과 협조하여 연방의 도서관과 문현정보기관에 관한 기계적 보조수단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한다.

19) 현재는 1972년 3월 9일의 의회공무원에 관한 연방

제9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196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12년 12월 20일의 스위스 연방중앙도서관규정과 공개되지 아니한 1961년 9월 5일의 연방행정도서에 관한 연방집행원결의는 폐지한다.

의결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의회도서관.

드디어나온다!

標準

電子工學用語辭典

大韓電子工學會 編

B6判 1090面·鮮明한 印刷·값 10,000 원

◆ 電子工學 및 그 關聯分野에 從事하는 學生·一線實務者·教育者·科學者·著述家·編輯人 모두의 必携書!

— 内容의 特色 —

- 電子·通信·컴퓨터·半導體分野에 걸쳐 廣範圍한 用語收錄
收錄用語數 1萬2千餘
- 外來語는 文教部制定表記法(1985. 12. 28 고시)에 따라 表記
- 混同될 우려가 있거나 難解한 用語에는 理解하기 쉽도록
괄호 안에 漢字 또는 原語量 併記
- 人名은 國籍에 따라 原發音을 表記
- 關聯文獻外에 學界·研究所·關聯一線機關의 最近의 意見을
幅넓게 수렴 反映하여 學問의 比重에 實務의 效用을 兼備

(株) 數學社

서울特別市 마포구 공덕동 105-67
전화(영업) 717-4561~5
대체구좌 010033-31-501320